

호텔 이용약관

제1조(본 약관의 목적 및 적용)

1. 본 약관은 주최회사 호호넷(이하 '당 호호넷')과 고객(호객) 간에 속박을 회피하는 자 및 실제 속박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2. 당 호호넷과 고객 간에 세부되는 속박계약 및 기타 관련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약관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상관례 또는 관습에 따릅니다.
3.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약의 철거에 관련된 것은 본 약관에 따르고, 그 고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수사항은 신용카드사와 당 호호넷 가맹점간의 약관에 따릅니다.
4. 당 호호넷은 본 약관의 하지, 법정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객과 별도의 특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약관 특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속박예약 신청과 속박계약의 성립)

1. 당 호호넷에 속박을 회피하는 고객은 당 호호넷의 속박 예약 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당 호호넷은 예약고객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해당 요청을 거절할 경우, 속박 예약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 ① 속박자와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여권번호, 연락처, 예약 보증을 위한 신용카드 번호 등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청탁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③ 기타 당 호호넷에서 필요하다고 청하는 사항

2. 고객의 속박예약 신청을 당 호호넷이 승낙하였을 때에 속박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제3조(속박예약 신청의 거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 호호넷은 고객의 속박예약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속박 요청을 할 때
2. 고객의 신용카드를 대
3. 고객이 범행 또는 공모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4. 고객이 전염병으로 명백히 판단될 때
5. 고객이 고객 또는 당 호호넷 직원에게 위배를 가하는 행동을 하거나, 금지물품(총총, 마약, 총기류 등)을 휴대, 소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
6. 속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당 호호넷에 대해 불편상 예상되는 정도 이상의 부담을 가지는 경우
7.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속박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8. 기타 당호호넷의 사유로 있는 경우

제4조(예약금)

1. 당 호호넷은 속박 예약 시 예약금의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예약금은 고객의 속박요금에 비례하여 충당됩니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당 호호넷이 고객에게 청구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예약금은 현금으로 부지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 호호넷이 신용카드회사에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당 호호넷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위약금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고객에 의한 속박계약 해제·해제)

1. 당 호호넷은 고객이 고객의 사유로 속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함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속박예정일이라 함은 속박계약상 각 속박장을 의미하며, 당 호호넷 제3조에 따른 속박예약을 위하여 당호호넷이 예약한 날짜입니다.
- ① 일부 속박 고지
가. 속박예정장 1일 전 18:00(한글날짜시간)까지 해제 - 해지의연장 경우: 위약금 없음
나. 속박예정장 1일 전 18:00(한글날짜시간)이후부터 차장 시간에 해제 - 해지의연장 경우: 최초 1일 악팅요금(액설요금,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속박계약 상표 시 악팅금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 100%
다. 속박예정장 당일 해제 - 해지 또는 No-show 속박예정장에 속박 등록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 하였을 경우: 최초 1일 악팅요금의 100%
- ② 단체 속박 고지: 별도 단체 속박 계약에 관하여 단체 내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2. 제3항에 위약금은 호호넷 해제기 또는 예약사용자를 통한 차장 속박 예약에 한하여, 현지 또는 온라인 여행사 등을 경유한 기타 예약은 해당 여행사와의 별도 위약금 약관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다.
3. 제3항에 위약금은 속박예정기간 안내의 악팅금의 합계로 한도로 하며, 상수와 비수기에 따라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4. 호호넷 사정에 따라 위약금 청구 시점은 변경될 수 있고, 고객은 위약금 지불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호호넷과 관련 금액 사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전항의 경우 차기, 항공기 등 공공운수 기관의 불편 또는 지연, 기타 속박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6조(당 호호넷에 의한 속박계약의 해제·해지)

1. 당 호호넷은 다음의 경우 속박계약이 성립한 후에도 이를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이 제7조에 따른 속박등록을 하기 전
가. 제2조 제1항의 정보가 허위인 때
나. 제3조 제1항,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될 때
다. 제42조에 규정된 악팅금 지불요금에 읊하지 않았을 때
- ② 고객이 제7조에 따른 속박등록을 하기 후
가.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될 때
나. 당 호호넷이 정한 이용규칙을 불이행하였을 때
다. 장기(속박 고객이 해제 제2항과 따른 이용요금 지불 요청에 읊하지 않았을 때
라. 기타 고객이 대한민국 법령, 본 약관 규정 또는 호호넷과 별도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호호넷과 관련 금액 사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에 따라 당 호호넷이 속박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당 호호넷은 당 호호넷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등록특례)

1. 속박등록은 속박일 15:00부터 가능하나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안내됩니다.
2. 고객은 당 호호넷을 도착하는 즉시 프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 제2조 제1항의 사용
- 나. 보증금 및 속박 예정 기간 전제 계약이용료의 10%에 해당하여, 책실 요금 외에 호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퇴숙시 미납될 경우 이로써 충당합니다. 결제를 위한 유동한 신용카드는 정부
3. 당 호호넷은 제2호의 신용카드 유효성을 확인한 뒤 보증금을 청탁하며, 퇴숙 시 이를 취소합니다.
4. 고객은 본 조의 속박등록을 마침으로써 속박계약상 속박기간 전체에 대한 속박 등록이 완료됩니다.

제8조(이용요금의 차별)

1. 고객은 퇴숙 시 이용요금(액설요금,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을 합하여 고객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호호넷은 당 호호넷과 고객이 대체로 특약상 조건과/or 또는 관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되어 진전되어 이용요금의 지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당 호호넷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저수수인은 현금,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월회제 편성표, 월회제 편성표, 관광상품권, 리워드포인트, 및/또는 기타 월회호텔에서 발행한 속박권 등으로 하여 개인수표는 수시하지 않습니다.
4. 고객은 이용요금 지불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퇴숙 예정 1일전에 이용요금 정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제3조에 따른 속박등록을 원한 이후에는 고객 죽의 사유로 속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차별하여야 합니다.

제9조(액설 키 수령 및 반납)

1. 고객은 속박등록 시 프린트에서 책실 키를 수령하고자 퇴숙 시 이용요금 차별과 함께 프린트에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2. 고객이 퇴숙 중 책실 키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프린트에 통보하여 주시고, 제 세작비율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속박의 책임)

1. 속박에 대한 당 호호넷의 책임은 프린트에서 속박등록을 완료하는 시점부터 시작되어 고객이 퇴숙을 위해 프린트에서 이용요금 차별 및 책실 키를 반납했을 때, 끝나게 됩니다.
2. 고객이 당 호호넷이 정한 이용규칙 및 본 약관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고,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 호호넷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이용규칙의 준수)

- 고객은 당 호호넷이 정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조(영업시간)
1. 당 호호넷의 부대시설 영업시간은 별도로 게시되어 있으며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상 문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 호호넷의 부대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거나 타 고객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객은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당 호호넷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퇴숙시간)

1. 당 호호넷의 퇴숙시간은 정오가 원칙이나 현장 사정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퇴숙시간이 결과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초기요금이 부과됩니다.
- ① 15:00 까지: 1일 책실요금(1일 책실요금이 아닌 당 호호넷의 실 판매가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의 30%
- ② 17:00 까지: 1일 책실요금의 50%
- ③ 17:00 이후: 1일 책실요금의 100%
3. 호호넷 사정에 따라 퇴숙 시간은 변경될 수 있고, 고객은 추가 요금 지불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퇴숙시간 및 관련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호텔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약관이 아니라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고객은 속박계약의 체결 시점에 시행 중인 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변경된 약관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 본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과 당 호호넷이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